

[별표 6의4] <신설 2011.9.30>

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(제18조의3제4항 관련)

번호	법정기부금단체	지정기간
1	건국유·소·중·고등학교	2011.7.1.부터 2016.12.31.까지
2	교토국제중학교고등학교	
3	금강학원소중고등학교	
4	대련한국국제학교	
5	동경한국학교	
6	무석한국학교	
7	북경한국국제학교	
8	브라질한국학교	
9	상해한국학교	
10	선양한국국제학교	
11	아르헨티나한국학교	
12	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	
13	젯다한국학교	
14	천진한국국제학교	